

자유경쟁시대 언론의 책임

이 해 복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 중재위원

제 6 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우리 언론은 분명히 자유경쟁시대로 접어 들었다.

제 32 회 신문의 날 표어가 「자유경쟁시대의 신문」을 내세웠지만 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제 실시, 방송사도 새로운 방송법에 의한 설립등록이 가능케 됨으로써 이미 기존의 신문·통신이나 방송사 외에 새롭게 발족을 시도하는 등록신청이 문화공보부 당국에 쇄도하고 있어 그 수가 이미 서울·지방을 합쳐 20 여 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실사가 진행되어 지난 4 월 하순에는 8 개 일간지에 대해 등록증이 교부되었고 또 나머지 신청매체에 대해서도 실사가 끝나는 대로 등록증이 교부될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일간지수는 40 여 개로 그 수가 불어날 것 같고 현재 등록신청을 준비중인 정기간행물까지를 합계 추산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48 년 정부수립 이전까지 미군정아래 언론의 첫번째 자유경쟁시대를 맛보았다. 그 후 1960 년 4 · 19 혁명 이후 5 · 16 군사 혁명 이전 제 2 공화국시대의 약 1 년간 두 번째의 언론자유경쟁시기를 경험했다. 제 2 공화국이 헌법으로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검열과 허가를 금지시킴으로써 언론은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향유하게 되어 또 한번 이땅에 정기간행물의 홍수사태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의 막중함을 망각한 일부 언론이 「진정한 언론자세」에서 이탈한 것이 전체언론을 사이버언론의 탁류 속으로 밀어 넣고 만 결과를 빚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경쟁이 아닌 무절제한 경쟁, 언론윤리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독자의 저속한 흥미에 영합하는 선정주의, 폭로주의로 치달은 결과, 4 · 19 혁명으로 값지게 얻은 언론자유가 제대로 개화하지 못한 채 봉우리에서 시들고 만 것이다. 수습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은 결국 5 · 16 군사 혁명을 초래했고 그 와중에서 언론은 건국이후 최악의 시련기를 겪으면서 제 5 공화국으로 이어졌고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자유언론이 심각한 규제의 시기를 체험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체험한 바이며 언론 스스로 자성해 볼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언론자유와 새로운 상황 하에서 「세 번째로 자유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언론시책에 대한 정부당국의 자세전환, 그리고 언론인과 언론기업의 성장 등으로 미뤄, 이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에 우리가 맞이한 언론자유화의 뿌리는 과거우리가 겪었던 8 · 15 광복이후, 그리고 4 · 19 이후 한 시기와는 달리 착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낙관할 수 있다.

언론자유화시대를 맞이해서 일시에 많은 언론매체가 출현할 경우 불가피하게 살아 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매체는 기존의 매체대로, 또 새로 등록되는 매체는 기존의 매체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경쟁적인 입장에 설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침범할 수 없는 전문성과 특색을 지닌 매체가 아니고 비슷비슷한

유형을 이를 경우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쟁은 치열의 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싫든 좋든 과다경쟁현상이 나오고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폭로주의, 선정주의로 치닫기 쉽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기자의 품위와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신문·방송을 막론하고 기자는 취재보도활동을 함에 있어 진실 보도를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금지와 품위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건 언론단체 또는 언론사 자체가 한결같이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도와 인권보도에 있어 보도의 자유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윤리강령에도 「타인의 명예와 자유」 조항에 「신문은 특히 개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호기심 또는 악의에서 개인의 권리나 감정을 침해할 수 없다」 고 못박고 있다. 또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공공이익을 위함이 아니고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보도 또는 평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고 명예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인의 금지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구로 신문윤리위원회가 있고 윤리헌장이 있으며 또 한편 각 언론사의 자체규제기구로 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자율적인 규제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론관계법, 즉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안에 公的인 통제기구로서 언론중재제도를 존치, 강화한 것이다. 언론중재제도는 시민권익보호와 또 한편으로는 언론창달을 위해서 아울러 필요한 공적 통제기구로서, 그 형태는 다르지만 외국에도 여러 갈래 명칭의 유사한 기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설치 운영돼 오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제도는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로서 보도가 발생한 이후에 관여하는 사후장치이지 사전에 언론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님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중재위원회는 어떤 외부압력에도 초연한 독립기구로서, 언론인들 자체에 의한 자율규제기구가 아니라 공적인 통제기구로서, 각성 되어 있는 대중의 뜻을 수용해서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를 일반 국민이 입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며 사법적 제도가 아닌 그 전치제도라는 점에 특성이 있다.

특히 언론중재에 관해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는 「추후보도청구권」 까지도 제정, 정기간행물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다가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끝났을 경우에 대해 무죄추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권리와 기회를 부여해 주어 중재위원회가 추후보도청구권에 의한 분쟁도 중재하게 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명예회복문제에까지 관여하게 되어 인권신장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조항이라고 본다.

한편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또 피신청인이 두 번에 걸쳐 출석 아니한 때는 중재신청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중재기능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규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론중재기능의 강화에 때맞춰 언론사들의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츰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재위원회가 발족된 82년 이후 연도별 중재신청건수(각 3월말까지의 통계)가 88년 들어 가장 많은 13건이었고 화해건수 역시 가장 많아 6건에 달했다는 점으로 봐서도 중재제도가 차츰 활성화, 정착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본격적인 자유경쟁시대로 접어든 언론상황에 비춰 볼 때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 보성전문 상과
-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KB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 역임
-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